

붙임 1 입사 결격사유 관련 제규정

□ 「인사규정」 제13조

제13조(채용결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
10.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품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11. 신체검사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12.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1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및 제83조(취업자의 해임요구)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4.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5. 채용비위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 범죄
17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검 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□ 「인사규정」 제13조의2

제13조의2(채용의 취소)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임용 시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기재한 자
2. 수습기간에 있는 자로서 교육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
3. 임용 시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소정의 학력 또는 자격을 기한 내에 취득하지 못한 자
4.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
5. 채용비위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용된 자

□ 「채용업무 시행세칙」 제14조

제14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전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할 수 있다.

1.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 전형에 응시한 경우
2.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
3. 필기전형을 포함한 모든 채용 전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4.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